

의안번호	제 171 호
의 결 연 월 일	2007년 월 일 (제 266 회)

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7년 11 월 12 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#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7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년    월    일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,
-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,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)
-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함(안 제5조)
- 도지사는 구내식당·매점·의무실·체력단련실·콘도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(안 제6조)
- 도지사는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, 우수·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,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(안 제7조)
- 후생복지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(안 제8조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소속공무원”이라 함은 충청북도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(청원경찰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2. “후생복지제도”라 함은 소속공무원의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·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.
3. “선택적 복지제도”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1. 질병·육아·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
2.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

제4조(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)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·운영함에

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)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직원휴게실 · 구내식당 · 매점 · 예식장 · 자동판매기
2. 의무실 · 체력단련실
3.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 · 연수원 · 콘도 등

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도지사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
2. 우수 · 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
3.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
4.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
5.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

제8조(운영의 위탁) 이 조례에 의한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 법령 발취

### □ 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)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